

<입장문>

안녕하십니까?

진주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사망 사건의 유족입니다.

저희가 이번 일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경찰 초동조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시 사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진주 개양 파출소 문00 씨는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제 동생의 몸과 얼굴에 손을 대며 당시 흰 장갑(보통 경찰들이 출동 시 끼는 장갑)으로 제 동생에게 물어 있던 피를 닦았고 그 장갑을 현장에 버리고 시간이 지난 후 다시 회수하는 등 원칙에 맞지 않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장갑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모르는 상황에서 감염의 유무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제 동생이 살았다더라면 그런 감염은 생각 안 한 건가요?

또한, 제 동생이 평소에도 항상 지니고 다녔고 사고 당시 지니고 있던 크로스백을 구급차나 저희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사고가 나면 물품은 경찰이 보관하거나 구급차에 실어서 보내주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렇지 않았고 현장에 있던 직장동료라고 하는 분에게 마음대로 물건을 내주었습니다. 그 당시 그 현장이 살인 현장인줄도 모르고 아무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 물건을 직장동료라고 그냥 쥐버리는 경우가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받은 직원의 인적사항을 적었다고 하였으면서 결국에 알아보니 가방을 준 사람의 인적사항은 적지도 않고 그냥 물건을 전달 한 것입니다. 경찰들에게는 그냥 사망자의 물건일지라도 저희에게는 소중한 제 동생의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 물건을 받아간 직장동료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도 안한 건가요? 물론 저희가 드리는 말은 그 친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받고 일하는 경찰이라는 사람은 모든 정황을 생각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사소하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저희에게는 저희 동생의 유품입니다. 근데 그 유품을 아무에게나 줘서 물품이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이후 경찰서에서는 문00씨가 말을 번복하며 잘못을 인정하려하지 않았고, 해당 경찰관이 아직 미흡해서 조그마한 실수가 있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들은 전부다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져 저희가 물품을 일일이 다 찾으려 다녔고, 제 동생의 크로스백에 들어있던 현금 또한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경찰의 초동조치에 몇 번이나 항의하였고 문00씨는 일절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해당 개양파출소 또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이런 잘못된 경찰의 초동조치에 대해 내부적으로 경찰 감싸기가 아닌 경찰 측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주기를 바라며, 문00씨의 잘못된 초동조치 및 미흡한 경찰을 현장에 배치하고 책임을 회피하려한 개양파출소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근로자성 유무입니다.

현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첫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 한다. 제 동생은 경제적으로 힘든 환경 속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했고 그만큼 근로를 제공했습니다.

둘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 이라함은 근로자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 않는 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동생의 카톡방에 있는 증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측은 이것은 관리감독 및 지휘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고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셋째,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제 동생이 하루 평균 15시간 넘게 일을 하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사업주라는 사람이 출근유무 및 출퇴근 시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관리하고 식사시간은 물론 심지어 화장실 보고까지 하도록 하면서 근로자가 육체적으로 힘들 것은 왜 생각을 못했나 싶습니다. 이것을 제 동생의 근무기록을 보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라고 명칭 되어있습니다. 어떠한 명칭으로도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이라함은 쿵 배달 대행업체도 그것이 현금으로 주었던 앱의 캐시로 전달되든 그것이 결국 제 동생에게 돈이 지급 된 것이면 그것도 그밖에 어떠한 명칭 안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희가 이 질문을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물었습니다. 하시는 말이 이 건 그 명칭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배달 업무를 관리자가 지시하고 그에 따라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구조이고 배달 앱 내부의 돈을 사업주가 마음대로 관리하고 출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것이 왜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인가요? 제대로 조사를 하지도 않고 근로복지공단이든 고용노동부든 각 공공기관들이 조사를 해야지 유족인 우리가 다 조사를 해서 자료를 넘겨주고 저희가 무슨 경찰인가요?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는 건가 싶으며, 그저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대충 조사하는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의 현 실태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을 갖게 되었고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히 근로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과 제동생의 사항이 다른 내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제 동생은 항상 '저녁5시에서 새벽 5시까지 정해진 근무시간에 출근을 했고 출근을 하지 않거나 휴무를 하면 왜 출근을 하지 않냐 왜 쉬냐' 이것이 이 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논리적으로 따져 봅시다. 사업주가 자신의 직원이 아닌데 왜 이런 지시를 할까요? 저희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근로감독관이 배달대행 업체에 조사를 해서 물어봤다. 그건 그냥 임시적으로 사고 방지를 위해 정해둔 거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걸 왜 사무실 칠판에다가 명시를 해두고 어길시 벌금입니다. 직급에 불만을 가지지 마세요.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그것이 근무를 해주는 근로자로서는 심적으로 부담이 가지는 않을까요? 근로감독관님이 그런 조사를 하면서 제대로 된 증거는 확보하

였습니까? 그냥구두로 조사하는 것이 무슨 조사입니까? 그리고는 저희 말은 다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 나라세금을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일까요? 제대로 된 조사를 확실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배달 앱에 들어 있던 제 동생의 돈을 사장마음대로 빼돌린 것입니다.

제 동생이 사고가 난 2019년 10월 24일 당일 날 몇 시간 뒤에 제 동생의 배달 앱에 있던 돈 80,600원을 사업주 즉, 사장이 본인의 마음대로 그 돈을 빼돌렸습니다.

남들 눈에는 80,600원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에게는 제 동생이 열심히 일해 모아둔 귀중한 돈입니다. 그 돈은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어떻게 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돈을 손대고 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는 천인공노할 패륜적 범죄입니다.

만약 이 돈을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사고 당일 저희와 만나서 얘기했을 때 졌을 겁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3주가 지난 후 저희가 제 동생의 휴대폰을 복구하고 배달 앱에 들어갔을 때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그 일을 사장에게 얘기하니 사장은 그제 서야 변명을 하기에만 급급했고 심지어 자신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한 업체의 사장으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사업운명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 동생이 이런 사장 밑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업주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며, 경찰고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네 번째, 배달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조치의 필요성과 배달 업무 근로자의 인식개선입니다.

이번 제 동생의 사고로 배달 산업에 대해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배달산업에 대한 규제 및 보호조치가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달대행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안전성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배달 업체 사업주가 본인의 사업 확장과 이윤을 위해서 배달원의 운전면허 유무, 운전 경력 유무, 나이 등의 상세한 정보를 검토하지도 않고 산재문제는 생각지도 않고 고용하여 일을 시키면서 책임은 지려고하지 않는 이러한 경우가 현 배달 업체에 보편화된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배달 산업의 규제 강화가 필요하며 배달원도 근로자로서 업무현장에서 법적 및 여러 가지 보호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배달산업에 대한 규제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진즉에 이루어졌다면 제 동생에게 이러한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의 공공기관과 더불어 국가적으로 현 배달산업에 관심을 기울여 배달산업 근로자의 근무상황 개선과 배달산업의 규제 강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제 동생의 뉴스와 관련하여 많은 악성 댓글을 보았습니다. 모든 배달원들이 함부로 운전하고 과속하고 신호위반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동생은 어떤 누구에게도 평소에 해를 끼치지 않았고 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제 동생에게 악성 댓글을 다는 것을 멈추

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달 대행 업무를 양아치가 하는 일이다. 진짜 할 것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하는 등의 배달 업무를 무시하는 인식도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본인에게 잘 맞는 일이라서 착실히 열심히 이 배달 업무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모든 분들을 그저 하찮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삼가주시기를 바라며 배달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모두 함께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의 입장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경황이 없어 두서없이 나열한 점 이해해주시기를 바라며 저희와 함께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